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07호)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0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 요	1
1.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07호)	1
2.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09호)	3
II. 검토의견	5
1. 여성용 위생용품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출산·양육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5
2. 여성용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
3.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입	16

I. 개 요

1. 전현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현회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6. 3. 6.
- (3) 회 부 일 : 2026. 3.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전현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현회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6. 3. 6.
- (3) 회 부 일 : 2026. 3.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제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소비세의 역진성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²⁾는 서민생활의 지원 및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라. (생략)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면서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역

가.~나. (생략)

4의3. 관리주택,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료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나. (생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나. (생략)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외국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³⁾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⁴⁾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든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임상엽 · 정정운, 「세법개론(2026)」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100+10 \xrightarrow{\quad} \boxed{A} \xrightarrow{\quad} 120+12$ 매출세액 $120 \times 10\% = 12$ 매입세액 $\frac{(10)}{2}$ $\downarrow$ 납부	$100+10 \xrightarrow{\quad} \boxed{A} \xrightarrow{\quad} 120+0$ 매출세액 $120 \times 0\% = 0$ 매입세액 $\frac{(10)}{(10)}$ $\downarrow$ 환급	$100+10 \xrightarrow{\quad} \boxed{A} \xrightarrow{\quad} 13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downarrow$ 환급 ×

주: $120+10=130$,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0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자료: 이철재 · 정우승 · 유은종, 「세법 워크북(2026)」

2. 여성용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u>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u> ○ <u>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u> ○ <u>영유아용 기저귀</u>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 ○ <u>영유아용 기저귀</u> ○ 영유아용 분유	☐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 제외 <u><삭 제></u> ○ (현행과 같음)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 <u>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u> <u><신 설></u>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 및 출산·양육 관련 재화에 대한 면세 특례 도입 <u><삭 제></u> ○ <u>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u>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전현의의원안 2026. 3. 6. 발의(의안번호 17307, 17309)

☐ 개정안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5)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

로 규정된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를 삭제하고, 대신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여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월경용품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동시에, 영유아용 기저귀 및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같이 출산·육아 관련 필수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여성용 위생용품은 평균 15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한 절대필수품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차이를 조세관련 법규에 반영하여 영세율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양성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과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자 2022년 전국조사를 통해 만 13세 이상 5,56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 폐경, 피임, 관련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월경 중인 청소년과 성인의 평균 초경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연령은 각각 12.11세, 13.03세였으며,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의 평균 초경 연령은 14.30세, 폐경 성인의 마지막 월경 연령은 평균 50.13세로 조사되었음.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월경 중인 청소년 (961명)	월경 중인 성인 (2,137명)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 성인 (1,307명)
13~15세	480 (49.9)	-	-
16~18세	481 (50.1)	-	-
19~29세	-	683 (32.0)	1 (0.1)
30~39세	-	624 (29.2)	5 (0.4)
40~49세	-	705 (33.0)	105 (8.0)
50~59세	-	125 (5.8)	758 (58.0)
60~64세	-	-	438 (33.5)

자료: 질병관리청, 「한국 여성의 월경·폐경 관리: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 2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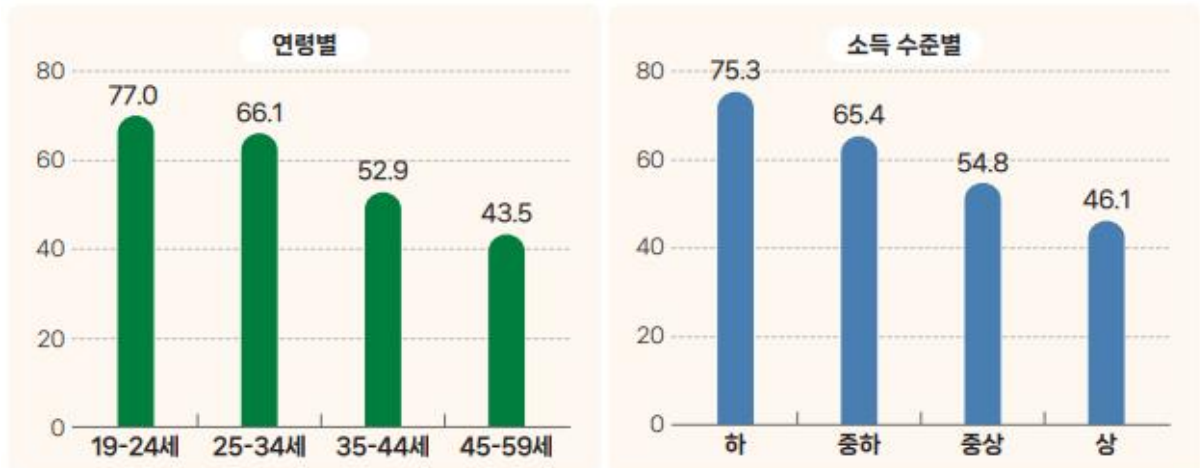
둘째, 여성용 위생용품의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2022년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월경을 하는 여자 중 58.7%가 월경용품 구매 비용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4세의 경우 구매 부담률을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 수준 하(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여성의 경우 75.3%가 구매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성인 여자의 연령별·소득수준별 월경용품 구매 부담률(2022년)]

(단위: %)



- 주: 1. 월경용품 구매 부담률은 월경을 하는 여자 중 월경용품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여자의 분율로, 월경용품 구매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2.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을 '소득 수준 하'로,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을 '소득 수준 중하'로,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을 '소득 수준 중상'으로, 600만 원 이상을 '소득 수준 상'으로 구분함.
자료: 질병관리청, 한국 여성의 월경·폐경 관리: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 결과, 2023.6.

셋째,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부분 면세에서 완전 면세로 전환 될 경우 제조·유통과정에서 매입세액 환급으로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 함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 및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원칙 및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개정안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출산·육아의 필수물품으로서 분유, 유모차 등 영유아용품과,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유사하게 모성권 보호를 위한 산후 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 등에서 동일한 영세율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최근 여성 위생용품 보급,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리용품 지급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최근 2026년 7월부터 공공 무상생리대 지원 정책을 시범운영하는 등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출산·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으로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고, 재정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여성 생리용품 지원 관련 재정정책]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포인트(월 14,000원) 지원
공공생리대 지원	-	12개 기초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 설치 및 시범운영(2026.7.6.~)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생리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영세율로 전환할 경우 2027년 932억원 등 2027~2031년 5년 간 총 6,167억원(연평균 1,2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생리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계	△932	△1,215	△1,275	△1,339	△1,405	△6,167	△1,233
국세(74.7%)	△696	△908	△953	△1,000	△1,050	△4,607	△921
지방소비세(25.3%)	△236	△308	△323	△339	△356	△1,560	△3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입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u><신 설></u>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제외 및 출산·양육 관련 재화에 대한 면제 특례 도입 <u><삭 제></u> ☐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전현의의원안 2026. 3. 6. 발의(의안번호 17307, 17309)

☐ 개정안은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에 대한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출산·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영유아 용 분유 외에도 면세되는 출산·양육 재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경우 양육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임을 감안할 때, 출산·양육 관련 물품에 대해 면세가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 양육가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24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⁶⁾에 따르면, 2024년 조사 참여가구의 한 달 평균 양육비⁷⁾는 111만 6,000원(영아가구 109만 1,000원, 유아가구 116만 5,000원)으로 가구 평균 소득(625만 4,000원)의 약 17.8%를 양육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둘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⁸⁾은 2023년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후 2025년 잠정 0.8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평균 1.43명)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잠정)
출생아 수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254
합계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0.80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6) 「2024년 보육실태조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024.12.

7) 이 때 양육비는 보육비, 교육비, 의류비, 실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8)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출산·육아의 필수물품으로서 분유, 유모차 등 영유아용품과,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유사하게 모성권 보호를 위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 등과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이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⁹⁾ 및 자녀세액공제¹⁰⁾ 등의 세제지원이 있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동·양육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0)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문 의 처
02)6788-5147